

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021
------	------

2016. 3. 3.  
기획경제위원회

## I 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년 2월 15일,  
신선택의원외 5명(찬성의원 10명)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15일

다. 상정결과 :

### 【서울특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】

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16.3.3.)상정, 제안설명,  
검토보고, 의결(원안가결)

## II . 제안설명의 요지(신선택 의원)

- 노사간 참여한 의견대립을 실무적으로 조정하여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실무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복잡한 노사간 의견대립을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‘실무위원회’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해 “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”의 운영 활성화와 노사관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현황

- 서울시(이하 “시”)는 서울지역 노사민정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“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”(이하 “노사민정협의회”)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- 노사민정협의회는 2000년부터 운영해 오던 노사정위원회를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1)에 따라 2011년 주민대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구성·운영하고 있으며,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로 “서울모델협의회”를 두고 있음.

---

1) 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,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노사민정협의회의 특별위원회인 서울모델협의회는 「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2)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노사정 주체간 사회적 대화기구로 출범하였으며 (2000.08), 서울시 산하 11개 투자·출연기관의 노사대표 및 공익대표로 구성되어 노사간 분쟁을 조정하고 화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.<참고자료 2>

### 〈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개요〉

- 운영근거
  - 「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
  - 「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구 성 : 위원장(시장), 근로자대표 1, 사용자대표 1, 공익대표 5, 시의회의원 1,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
- 기 능 :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, 지역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,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
- 임 기 : 2년 (연임가능, 임기만료된 경우 후임자 위촉시까지)
- 회의요구 : 위원장, 재적위원 1/3이상
- 운 영 : 안전발생 시 즉시 회의개최

- 당초의 주민대표 참여를 통한 협의회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달리,

2) 제7조(특별위원회) ①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3년간 단 두 차례의 본회의만이 개최되었으며, 2015년 개최된 한 차례의 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되었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.

〈 최근 3년간 본회의 개최 현황 〉

구 분	2013	2014	2015	계
노사민정협의회	-	1	1	2

〈 최근 3년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내용 〉

일 시	안 건	비 고
2014.8.17	노사민정협의회 공익대표 및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위촉	위원위촉
2015.7.27	서울시 노사정협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서울모델협의회 참여기관·인원 확대 (6개기관 18명→11개기관 28명)	서면회의

다. 실무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(안 제7조의2)

- 노사민정협의회는 그동안 근로자 대표 중 일부의 불참에 따른 노동단체의 대표성 부족과 협의회 위원들간의 회의안건에 대한 이견으로 회의개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음.
- 이에 따라 안 제7조의2는 실무위원의 인사를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여 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, 조정을 통해 사전에 각종 사안에 대한 이견을 충분히 조정하고자 함.

- 새롭게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통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조율이 궁극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실무위원회 설치의 입법타당성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.
- 다만, 연간 1~2차례 열리는 노사민정협의회가 형식이 아닌 서울지역 근로자들의 노사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·조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임.
- 노사민정협의회는 산하 실무위원회 이외에도 특별위원회인 서울모델협의회를 두고 있어 여러 위원회의 중첩이 자칫 의사결정의 지연이나 비효율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.
- 한편, 위원회 남설방지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·폐지를 유도하고,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「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」에 따라 신규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존속기한을 2년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.
- 현재,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산하 부속위원회로 본위원회와 달리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실무위원회 등에 대한 문제도 위원회 남설을 막는 차원에서 관리가 요구됨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Ⅴ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#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실무위원회) ① 협의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

1.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
2.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
3.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-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협의회 또는 특별위원회(이하 “협의회등” 이라 한다)” 를 “협의회, 특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(이하 “협의회등” 이라 한다)” 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 <p>제8조(의견청취 등) ① 협의회 또는 특별위원회(이하 “협의회등”이라 한다)는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관계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,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의2(실무위원회) ① 협의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</li> <li>2.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</li> <li>3.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li> </ol> <p>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제8조(의견청취 등) ① 협의회, 특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(이하 “협의회등”이라 한다)는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관계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,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